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7-06

대 전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8구합1482 취득세부과처분취소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[redacted]군수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[redacted]

담당변호사 [redacted]

변 론 종 결 2019. 7. 17.

판 결 선 고 2019. 9. 25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2. 11. 12. 원고에 대하여 한 B 화물자동차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7-06

이 유

1. 이 사건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(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)는 일반화물 운송, 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.

나. 피고는 2012. 11. 12. 원고에 대하여, 원고가 2011. 12. 15. B 트럭(이하 '이 사건 차량'이라 한다)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5,233,960원을 부과 · 고지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5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차량은 D가 이를 구입하고 원고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명의로 등록을 한 것이어서 이에 관한 취득세는 실제 차주인 D가 부담해야 함에도,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.

3.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,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,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는데,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(2012. 11. 12.)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등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약 6년이 경과한 2018. 11. 14.에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,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7-06

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,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